

① 퇴직소득[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[퇴직소득의 범위]]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[2013.01.01 개정]

1.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[2013.01.01 개정]

2.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[2013.01.01 개정]

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[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[퇴직소득의 범위]]으로 정하는 소득 [2013.01.01 개정]

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. [2013.01.01 개정]

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(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)으로 한다.

다만, 대통령령[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[퇴직소득의 범위]]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(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,

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)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. [2019.12.31 개정]

2019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3년
[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
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
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]
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

$$\times \frac{1}{10} \times \frac{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}{12} \times 3$$

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
[2020년 1월 1일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근무기간이
3년 미만인 경우에는
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]
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

$$\times \frac{1}{10} \times \frac{2020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}{12} \times 2$$

④ 제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. [2014.12.23 개정]

1. 근무기간 : 개월 수로 계산한다.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. [2014.12.23 개정]

2. 총급여 : 봉급 · 상여 등 제20조[근로소득]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(제12조[비과세소득]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)을 합산한다. [2014.12.23 개정]

⑤ 삭제[2013.01.01]

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[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[퇴직소득의 범위]]으로 정한다. [2009.12.31 개정]

▣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[퇴직소득의 범위]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



① 법 제22조[퇴직소득]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(이하 이 조에서 “과세기준금액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 [2014.02.21 개정]

1. 「국민연금법」 또는 「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[2014.02.21 개정]

가.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(사용자부담분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의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[2014.02.21 개정]

나.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[2014.02.21 개정]

2. 제1호 외의 일시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[2014.02.21 개정]

$$\text{과세기간 일시금 수령액} \times \frac{\text{과세기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}}{\text{총 기여금 납입월수}}$$

② 제40조[공적연금소득의 계산[2013.02.15 신설]] 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,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계산한다. [2014.02.21 신설]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제외기여금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뺀 금액을 법 제22조[퇴직소득]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시금으로 한다. [2014.02.21 신설]

④ 법 제22조[퇴직소득] 제1항 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 [2014.02.21 항번개정]

1. 법 제22조[퇴직소득] 제1항 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[2013.02.15 개정]

2. 「과학기술인공제회법」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[2013.02.15 개정]

3. 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[2013.02.15 개정]

4.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[2016.02.17 신설]

⑤ 법 제22조[퇴직소득]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”이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0조[접대비의 범위[2019.02.12 조번개정]]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 [2019.02.12 개정]

⑥ 법 제22조[퇴직소득]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“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”이란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(개월 수로 계산하며,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)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 [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금액]을 말한다. [2015.02.03 신설]

⑦ 법 제22조[퇴직소득] 제4항 제2호에 따른 총급여에는 근무기간 중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포함한다. 다만,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의 급여지급 규정이 있는 법인의 주거보조비, 교육비수당, 특수지수당, 의료보험료, 해외체재비, 자동차임차료 및 실의료비 및 이와 유사한 급여로서 해당 임원이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 국내에서 지급받는 금액을 초과해 받는 금액은 제외한다. [2020.02.11 신설]

▣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[접대비의 범위[2019.02.12 조번개정]]



① 주주 또는 출자자(이하 "주주등"이라 한다)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(이하 "임원"이라 한다)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. [2019.02.12 개정]

1. 법인의 회장, 사장, 부사장, 이사장, 대표이사,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**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** [2018.02.13 신설]

2. 합명회사,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**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** [2018.02.13 신설]

3. 유한책임회사의 **업무집행자** [2018.02.13 신설]

4. **감사** [2018.02.13 신설]

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**직무에 종사하는 자** [2018.02.13 신설]

②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,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.[2019.02.12 개정]

③ 삭제[2008.02.22]

④ 삭제[2009.02.04]

⑤ 삭제[2009.02.04]

⌚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른 Case 및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급여지급규정 존재 여부

① 퇴직급여 지급 배수 : "2배 or 3배"

② 퇴직급여지급규정의 퇴직금 계산시 : "직전 1년 급여 연평균환산액 or 직전 3년 급여 연평균환산액"

③ 법인 임원 입사일 2011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일 일때 정관 또는 정관에 위임 주주총회회의록 규정 존재 여부

-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2조[정의] 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[이하 이 조에서 "현실적인 퇴직" [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[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]]]이라 한다]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. [2019.02.12 개정]
- ② 현실적인 퇴직[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[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]]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. [2009.02.04 개정]
1.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[2019.02.12 개정]
 2.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 · 합병 · 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[2019.02.12 개정]
 3.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8조[퇴직금제도의 설정 등]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(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 [2009.02.04 개정]
 4. 삭제[2015.02.03]
 5.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[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[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]]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(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 [2010.02.18 신설]
- ③ 법인이 임원(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제43조[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]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)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
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.
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. [2019.02.12 개정]
-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[2009.02.04 개정]
1. 정관에 퇴직급여[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]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[2006.02.09 개정]
 2.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[「소득세법」 제20조[근로소득]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 [같은 법 제12조[비과세소득]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]으로 하되, 제43조[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]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]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[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[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]]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.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. [2019.02.12 개정]
-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,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. [2009.02.04 개정]
- ⑥ 제3항에 따라 지배주주등과 제43조[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]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지배주주등과 제2조[정의[2019.02.12 조번개정]] 제5항 제7호의 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 [2019.02.12 개정]

▣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[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]

① 삭제[2009.03.30]

② 영 제44조[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[2006.02.09 제목개정]] 제1항을 적용할 때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. [2019.03.20 개정]

③ 영 제44조[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[2006.02.09 제목개정]] 제2항 제5호에서 "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.[2010.03.31 신설]

1.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(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[2010.03.31 신설]

2. 임원(임원의 배우자 및 「소득세법」 제50조 [기본공제]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)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[2010.03.31 신설]

3. 천재·지변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[2010.03.31 신설]

④ 영 제44조[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[2006.02.09 제목개정]] 제3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(임원 또는 직원이 전입하는 때에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.

이하 이 항에서 같다)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

퇴직급여 전액 중 해당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(각 법인으로부터의 전출 또는 각 법인으로의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)을 임원 또는 직원이 해당 법인에서 퇴직하는 때에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. [2019.03.20 개정]

⑤ 영 제44조[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[2006.02.09 제목개정]] 제4항 제2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"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.

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,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. [2010.03.31 항변개정]

▣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[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]

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“특수관계에 있는 자”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. [2008.02.22 신설]

1.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[2008.02.22 신설]

가. 친족(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[특수관계인의 범위]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[2012.02.02 개정]

나. 제2조[정의[2019.02.12 조변개정]] 제5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[2019.02.12 개정]

다. 해당 주주등과 가족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[2008.02.22 신설]

라.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(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)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[2012.02.02 개정]

마.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[2012.02.02 개정]

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[정의(2019.02.12 조변개정)]

⑤ 1. 임원(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. 이하 이 항, 제10조, 제19조,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)의 임면권의 행사,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(「상법」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)와 그 친족(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[2019.02.12 신설]